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회칙

1장 총칙

2장 공간관리위원회 총회

3장 중앙공간관리위원회

4장 단과대학 공간관리위원회

5장 동아리 공간관리위원회

6장 공간관리 징계위원회

7장 중앙공간관리위원회 위원장

8장 공간관리위원회 집행국

9장 공간 운영

10장 회칙개정

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학생공간관리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회는 자기 단위의 공간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학내에 있는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 (지위) 본회는 아주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기구이다.

4조 (회원의 자격)

- ①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단대학생회에서는 해당 단위의 부회장이 된다.
- ②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학부(학과), 반 학생회에서는 해당 학생회의 회장이 되며, 회장의 권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
- ③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앙동아리에서는 해당 동아리의 회장이 되며, 회장의 권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
- ④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단대 및 학부(학과) 소속 소학회에 대해서는 해당 소학회의 회장이 되며, 회장의 권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
- ⑤ 위 단위의 회원이 부재 및 권위 시 해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부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③ 본회 활동으로 인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학교 관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6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공간관리위원회 총회, 중앙공간관리위원회, 단과대학 공간관리위원회, 동아리 공간관리위원회, 공간관리 징계위원회, 위원장, 집행국을 둔다.

2장 공간관리위원회 총회

7조 (지위) 학생공간관리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8조 (의장)

- ① 총회 의장은 중앙공간관리위원장이 맡는다.

9조 (구성)

- ② 총회의 재적인원은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4조 ③,④항의 회원은 소속 단체의 회장, 부회장 중 1인이 의결권을 가진다.

10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과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중앙공간 관리위원회에게 보고를 받고 결정한다.

- ① 회칙과 부칙을 개정한다.
- ②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전학대회에 이를 보고한다.
- ③ 부칙에 의거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따른 공간의 전면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중앙공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④ 공간관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요구한다.
- ⑤ 위원장 및 각 자치기구·단대별 공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불신임 결의한다.
- ⑥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11조 (소집)

- ① 총회는 학기개시 후부터 정기 전학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의장이 소집해야하며,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총회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 ③ 총회는 재적인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공간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12조 (안건 상정 및 공고)

- ① 총회의 본 안건은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소집 공고와 함께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공간관리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안건 상정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하고, 각 회원이 소속된 학생 자치기구에 안건에 관한 공문을 보내야한다. (임시 총회 개최 시 동일.)
- ③ 총회 기타 안건은 총회 전까지 받고, 총회 개최 자리에서 1/3이상이 발의에 동의를 했을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한다.

13조 (개회 및 의결) 총회의 업무 권한은 다음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 ① 총회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②,④,⑥항)
- ③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①,③항)
- ④ 재적인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10조 ⑤항)
- ⑤ 기권표가 찬성·반대의 표차보다 를 경우 재논의 후 재의결한다.
- ⑥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의결한다.

3장 중앙공간관리위원회

14조 (지위) 중앙공간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15조 (구성)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의 부회장을 원칙으로 하고 총 11개 단위의 공간관리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 ①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관위원의 대표 공간을 제외한 모든 학생 공간을 대표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부연합회장이 위원이 되며, 중앙동아리의 공간을 대표한다.
- ③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학생회의 부회장이 위원이 되며, 단과대학의 공간을 대표한다.
- ④ 각 단위의 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시 해당 소속의 운영위원회에서 직선 대표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다.
- ⑤ 각 단위의 대표가 부재 또는 결위 시 해당 단위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16조 (업무 및 권한) 공관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아주대학교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배치 권한
- ② 회칙 개정 발의
- ③ 총회의 소집 요구 및 총회 본 안건 상정
- ④ 본회의 집행국과 회원을 관리
- ⑤ 부칙에 따라 학생자치활동 공간에 대한 활용실태를 파악
- ⑥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어 부칙에 따라 공간사용관련 징계 심의
- ⑦ 미사용 공간의 입방 및 재배치와 퇴실 등 부분적인 공간조정
- ⑧ 학교 당국과 학생자치활동 공간에 대해 협의
- ⑨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에 요구

17조 (소집)

- ① 공관위 회의는 정기 공관위 회의와 임시 공관위 회의로 구분된다.
- ② 정기 공관위는 매주 1 회로 하고, 그 시기는 공관위에서 결정한다.
- ③ 임시 공관위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 ④ 공관위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18조 (의결)

- ① 공관위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 의결한다.

4장 단과대학 공간관리위원회

19조 (지위) 단과대학(이하 단대) 공간관리위원회는 단대의 최고 공간관리기구이다.

20조 (구성)

- ① 단대학생회에서는 해당 학생회의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학부(학과) 학생회에서는 해당 학생회의 회장이 위원이 된다. (단, 회장의 부재 및 결위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
- ③ 위 단위의 회원이 부재 및 결위 시 해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대신한다.

21조 (회칙)

각 위원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가질 수 있다.

22조 (업무 및 권한)

각 위원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실시 한다.

23조 (징계)

모든 징계 사항은 공간관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5장 동아리 공간관리위원회

24조 (지위) 동아리 공간관리위원회는 동아리의 최고 공간관리기구이다.

25조 (구성)

- ① 동아리연합회 부연합회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각 중앙동아리에서는 해당 중앙동아리의 회장이 위원이 된다. (단, 회장의 부재 및 결위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
- ③ 위 단위의 회원이 부재 및 결위 시 해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대신한다.

26조 (회칙)

해당 위원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가질 수 있다.

27조 (업무 및 권한)

해당 위원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실시한다. (단, 동아리 공간 배치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와 학생처의 심사로 진행이 된다.)

6장 공간관리 징계위원회

28조 (지위) 공간관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자치공간사용과 관련한 징계 결정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29조 (구성) 징계위원회는 공관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공관위원으로 이루어진다.
- ② 각 단위의 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시 해당 단위의 직선 대표자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다.

30조 (기능)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단체의 공간사용에 있어서 회칙 및 부칙에 위반된 사항이 무엇인지 심사하고 징계사항을 기록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기록된 징계사항을 차기 공관위에 문서화하여 인수인계 할 의무를 가진다.
- ③ 징계대상 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의견이 있을 시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징계 재심사항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1조 (위원장의 책무)

-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32조 (회의소집)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 하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징계는 부칙에 따라 집행한다.

33조 (회의록)

- ① 징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각 위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각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면 회의록에 명기해야 한다.

34조 (의결)

-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가·부 등수인 경우 의결한다.

35조 (공고)

- ① 징계 사항이 결정되면 학교 자유게시판에 게시한다.

36조 (의제기)

- ① 이의제기는 정계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처리한다.
- ③ 이의제기 처리에 불만이 있을 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7장 중앙공간관리위원회 위원장

37조 (지위) 부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공관위•정계위원회의 의장 및 집행국의 장이 된다.

38조 (임기) 학생회 임기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학생회 선거가 끝나는 동년 12월 마지막 일까지로 한다.

39조 (업무 및 권한)

- ① 대외활동에 있어 본회를 대표한다.
- ② 집행국을 임명한다.
- ③ 총회, 공관위, 정계위원회 및 집행국을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 ④ 아주대학교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0조 (권한대행)

- ① 부총학생회장이 궐위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승계한다.
-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공관위**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8장 공간관리위원회 집행국

41조 (지위)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42조 (구성) 집행국은 필요시 위원장이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각 국의 국장 및부장으로 한다.

43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회, 공관위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 ② 집행국은 공관위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고 총회의 요구 시 출석하여 발언한다.
- ③ 집행국은 제반 활동을 위하여 그에 맞게 원활하게 구성한다.
- ④ 집행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별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9장 공간 운영

44조 (**공간 운영의 기본원칙**)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 및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5조 (**공간 배정의 원칙과 기준**) 공간은 다음 각 단계별 필요성에 따라 분배하며, 필요에 따라 용도, **사용기간, 사용주체** 변경될 수 있다. (단, 아래의 각 호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1. 공간의 효율성 및 공용성
2. 소학회, 동아리 간의 형평성
3. 관리의 용이성

46조 (공간 사용 조정) 운영 및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배정, 사용기간 및 용도변경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7조 (추가 공간의 사용) 배정된 공간외의 추가 공간이 생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 용도를 정한다.

48조 (공간의 반납과 회수)

- ① 사용주체는 사용목적의 완성, 사용기간의 종료, 사용자격의 상실 및 중단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이를 위반한 경우 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공간의 회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9조 (공간의 실태조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교내 모든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50조 (공간 재배치)

- ① 해당 연도 **1학기** 개강 전에 완료한다.
- ② 공간 재배치는 '배분'과 '배치'로 나뉜다.
- ③ (배분)
 - 1. 배분이란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전체 학생자치공간의 개수를 각 단위에 일정 개수로 할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배분은 중앙공간관리위원회들이 각 단위별 재적 인원, 구성 주체 운영여건 보장, 필요성, 효용성 등에 따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3. 각 단위가 가지고 있는 활동 위치, 각종 환경 등에 따른 특수성 역시 배분 논의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배치)
 - 1. 배치란 각 단위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공간의 사용

주체와 위치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간의 위치는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후 변경될 수 있다.
3. 각 단위의 구성 주체가 가지고 있는 활동 위치, 각종 환경 등에 따른 특수성 역시 배치 논의에 반영할 수 있다.

⑤(공고)

1. 자료제출 공고는 해당 연도 2월 첫째 주 이내에 실시를 한다. (단, 중앙동아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⑥(이의제기)

1. 이의제기는 재배치 및 징계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공간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 ⑦ 재배치 확정 공고 후 개강일 이전까지 모든 퇴실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개강 일 이후 입실 절차가 시작 된다.

10장 회칙개정

51조 (발의) 본회의 회칙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의 발의
- ② 공관위 위원 1/2 이상의 발의
- ③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

52조 (의결) 회칙 개정 발의시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서 개정발의안에 관한 표결을 제13조 ③항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07년도 1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한다.
2. (시행) 본 회칙은 2007년도 1학기 정기 전학대회 후 공포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12년도 1학기 정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13년도 1학기 정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15년도 2학기 정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16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17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18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19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2020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